

“외국환거래 위규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

2019

관세청 외환조사과

< Check List 활용 안내 >

- 본 Check List는 수출입기업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고 대상 거래 중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방법 등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Check List를 활용하여 세부적인 거래 유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관세청에서 외국환거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주요 위규 사례를 분석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규가 자주 발생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점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Check List가 모든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절대적 기준이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시스템과 본 자료를 통해서도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시거나,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특정 외환 거래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세청 외환조사과로 문의하시거나,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 관련 연락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세청 외환조사과	042-481-7938

§ 상계 거래 관련 점검 §

< 상계 거래의 개요 >

- 서로 다른 거래나 행위에 따라 발생한 각각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
- 소멸되거나 상쇄되는 금액이 건당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장에게 사전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내 사후보고 要

Check ① 상계가 주로 발생하는 거래 유형

- 귀사의 거래가 다음의 거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heck ②, ③을 통하여 상계 거래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래유형	확인
① 수출입물품 불량에 따른 보상(클레임) 비용 처리가 빈번한 거래	
② 특정 해외거래처와 원자재까지 직접 거래하는 위·수탁 가공거래	
③ 수출입계약과 별도로 수입국에서의 판촉·수리 등 수입자의 현지 영업이 수반되는 거래	
④ 거래실적에 따라 가격이 할인되는 등 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거래	
⑤ 전용용기 사용 등 수출입거래에 특정한 조건이 수반되는 거래	
⑥ 기타 특정 해외거래처와의 거래가 일방의 수출 또는 수입거래가 아니라 상호간 채권·채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	

Check 2 대금 결제 내역 확인

- Check 1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의 해외거래처와 귀사간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Check 3을 확인 하세요

유 형	확인
① 거래처별로 수출입금액(신고금액, Invoice 금액, 계약금액 등) 보다 결제금액(수입대금 지급액, 수출대금 영수액)이 적은 경우가 있다. ex) 수입신고금액은 미화 50,000불인데 지급금액은 미화 30,000불	
② 해외거래처와의 수입채무 또는 수출채권이 실제 자금의 집행·수령과 관계없이 소멸되었다.	
③ 수출입계약은 매 건별로 발생하나, 대금 결제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입건을 모아 일괄 정산한다. ex) 1분기 수입물품 대금을 4월초에 일괄 결제하는 경우	
④ 동일한 해외거래처와 같은 물품·같은 물량이 반복 거래되는데, 결제 금액이 매번 다르다.	
⑤ 물품 수출입계약과 별개로 해당 거래처와 계약이 존재하고, 각 계약금액과 대금결제액이 불일치한다.	
⑥ 기타 수출입신고 금액과 결제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Check 3 상계 거래 여부 상세 확인

- 아래 표는 무역대금 결제 시 자주 발생하는 상계 거래와 관련하여 주로 상쇄되는 채권과 채무를 나열한 것입니다.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 또는 거래하시는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고, 상계 거래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진행하세요

거래 유형	결제 대상	상쇄(차감)한 금액	확인
① 수출입품 불량 보상비 처리	수입품 A의 대금 지급 (채무)	이전 수입품 불량 보상비(채권)	
		다른 수입품 B의 불량 보상비(채권)	
	수출품 A의 대금 영수 (채권)	이전 수출품 불량 보상비(채무)	
		다른 수출품 B의 불량 보상비(채무)	
② 위·수탁 가공거래	위탁가공품 수입대금 지급 (채무)	가공품과 무관한 원자재 수출 대금(채권)	
		기술지원비·상표 사용료 등(채권)	
	수탁가공품 수출대금 영수 (채권)	가공품과 무관한 원자재 수입 대금(채권)	
		기술지원비·상표 사용료 등(채무)	
③ 수입자의 현지영업 수반 거래	수입물품 대금 지급 (채무)	국내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채권)	
		수입물품의 국내 수리비(채권)	
	수출물품 대금 영수 (채권)	해외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채무)	
		수출물품의 해외 수리비(채무)	
④,⑤ 수출입 거래에 특정조건 수반	수입물품 대금 지급 (채무)	조건에 따라 이전 수입품에 적용된 가격 할인 보상비(채권)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채권)	
		전용용기 유상수출비용(채권)	
	수출물품 대금 영수 (채권)	조건에 따라 이전 수출품에 적용된 가격 할인 보상비(채무)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채무)	
		전용용기 유상수입비용(채무)	

§ 기간 초과 지급·영수 점검 §

< 기간 초과 지급·영수의 개요 >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입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시점과 물품 선적시점의 차이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신고 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2호)

Check ① 점검 대상 거래

- 귀사의 거래가 다음의 거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heck ②를 통하여 기간 초과지급·영수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래유형	확인
① 계약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	
② 계약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	
③ 미가공 재수출 목적의 금 수입거래로 계약건당 미화 5만 불 초과거래	

Check ② 신고 대상 거래 해당 여부

- 수출입대금 결제 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당초 결제 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선적 전에 대금이 결제된 경우, 1년 뒤 선적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보고 대상 여부(□부분)를 점검하세요

거래유형	결제·선적 방법	확인
① 미화 5만 불 초과 수출	본지사간 D/A, O/A거래로 물품선적 또는 환어음 일람 후, 3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영수	
	본지사간 거래 중 D/A, O/A 거래가 아닌 것으로 수출대금을 먼저 영수하고 물품 선적	
	본지사간 거래가 아닌 거래로, 수출 대금을 먼저 영수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물품 선적	
② 미화 2만 불 초과 수입	수입대금을 지급 후 1년이 지난 후에 선적 (선박·철도·항공기·산업설비로 2백만불 이하 지급은 제외)	
③ 미화 5만 불 초과 재수출 금 수입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수령하고 30일 지난 후 지급	
	내수용으로 30일 초과 연지급수입한 금 수출	

§ 제3자 지급 관련 점검 §

< 제3자 지급의 개요 >

-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
- 제3자 지급액이 5,000불 초과 10,000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행,
10,000불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 要

Check ① 제3자 지급이 주로 발생하는 거래 유형

- 귀사의 거래가 다음의 거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heck ②, ③을 통하여 제3자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래 유형	확인
① 투자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합작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거래	
② 원자재를 구입하여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해외 위탁가공업체에 바로 공급하는 거래	
③ 다국적 기업의 지역총판이나 한국지사 등을 통해 수입하는 거래	
④ 별도의 자금관리회사가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과의 거래	
⑤ 거래상대국의 법상 별도로 등록(허가)된 업자만 수출이 가능하여, 해외 제조업자와 수출업자가 각각 존재하는 거래	
⑥ 국내외 중개인을 통해 해외거래처와 계약하여 수입하는 거래	

Check ② 대금 결제 내역 확인

- Check ①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의 해외거래처와 귀사간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Check ③을 확인 하세요

유 형	확인
① 수입신고서, B/L, Invoice 상의 해외공급자(Shipper)와 당발 송금 신청서에 기재된 해외 수취인의 상호가 다르다.	
② 수입물품의 공급국과 당발 송금의 목적국이 서로 다르다.	
③ 수입금액보다 송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해외거래처와 수입금액보다 송금액이 월등히 많은 해외거래처가 존재한다.	
④ 기타 수입신고 금액과 결제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Check ③ 무역대금 지급 거래 내용 확인

- 무역 대금 지급 내용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 형	확인
① Invoice나 청구서에서 해외거래처가 별도로 수취인을 지정하는 경우	
② 수입품의 불량에 따른 클레임 제기 대상(보상청구 대상)과 물품 대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③ 해외거래처의 대표(개인)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④ 제조목적의 합작회사 설립에 공동 투자한 해외투자법인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⑤ 물품 대금수취인이 수출전문업자 또는 중개업자인 경우로 수수료 이외에 물품대금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⑥ 물품은 A국가의 본사에서 수입되는데, 물품 대금은 국내 다른 국가에 있는 지역 총판 또는 지사에 지급되는 경우	
⑦ 해외에서 직접 조달되는 특정 원자재를 지정하는 임가공거래로, 해외임가공업체에 임가공비와 원자재비용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점검 §

<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개요 >

-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수출대금을 현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 要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

Check> 은행을 통하지 않은 대금 지급·영수 확인

- 귀사의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 신고 여부를 검토·확인 하세요

구분	유 형	확인
수입대금 지급	① 국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 계좌에서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② 우리나라에 입국한 해외거래처 임직원에게 수입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③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물물교환)	
	④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외거래처에 현지의 창고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다.	
수출대금 영수	④ 수출물품 대금을 결제 받는 대신 해외거래처가 보유한 다른 물품을 무상 제공 받았다.(물물교환)	
	④ 수출물품 대금을 결제 받는 대신 해외거래처가 보유한 국내 창고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	